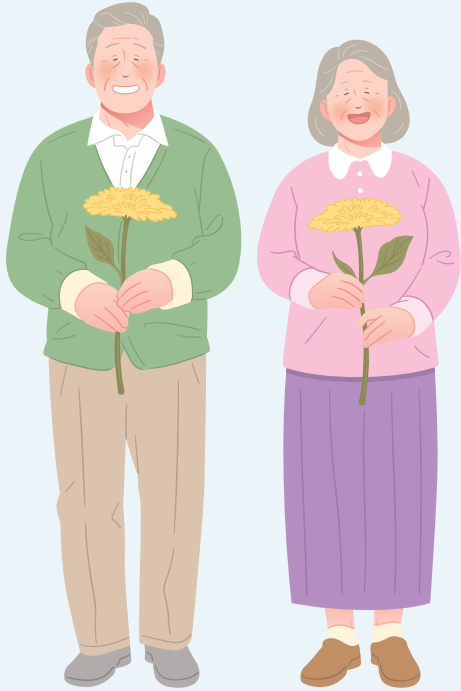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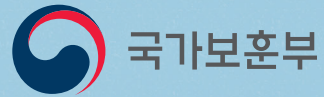




“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
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
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”

제70회 현충일 추념사 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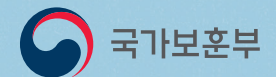


국가보훈부

대표 1577-0606
www.mpva.go.kr

참전유공자 배우자

등록 안내



국가보훈부

등록 안내

| 등록대상 |

- ① 참전유공자 배우자
*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
- ② 미등록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

| 신청기간 | 2026. 3. 17.부터 신청가능

* 개정법 시행일(2026.3.17.) 기준

| 신청방법 | 방문, 우편(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신청)

| 구비서류 |

- ① 등록신청서
* 국가보훈부 누리집(www.mpva.go.kr) ▶ 국민참여/민원 ▶ 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
* 전국 27개 보훈(지)청 보상과에 비치
- ② 신청인 신분증
- ③ 병적증명서
* 병적증명서를 통해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 월남 참전의 경우 파월 기간 명시(출국 및 귀국일자 모두 기재) 하여 발급
* 병무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- ④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*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되도록 발급
*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- ⑤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(아래 사항 모두 해당 시 제출)
-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
-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에 참전유공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인 경우
*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- ⑥ 사진(3.5cmx4.5cm)
*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

등록 혜택

생계지원금 지급

| 지원대상 |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)로서 **80세 이상**으로 생활이 곤란하신 분

* 8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가능

| 참고 | 생활수준조사(소득조사)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

* 2026년 소득인정액

1인가구	2인가구
1,282,119원	2,099,646원

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생활수준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음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확인서 제출)

| 신청방법 | 방문·우편(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)

| 구비서류 | 지급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임대차계약서 사본 등), 통장사본, 신분증

| 지급금액 | 월 15만원(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)

보훈재가복지서비스

| 지원대상 |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서 65세이상의 독거 또는 부부세대로 거동이 어려워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

* 유사서비스(노인돌봄, 장기요양(방문, 주간보호 등)) 이용자는 중복지원 불가

* 생활정도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

| 지원내용 |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하여 청소, 빨래 등 가사활동, 건강관리 등 서비스 지원

| 신청방법 |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신청서를 제출

자주 묻는 질문

Q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가요?

예, 가능합니다. 참전유공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6.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신 분의 배우자라면 모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전에 참전유공자와 혼인하였으나, 이후 참전유공자가 아닌 사람과 재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.

Q 다른 가족도 등록 가능 한가요?

배우자 외 가족은 참전유공자법에 의한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Q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신청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?

위임 받은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다만, 신청인의 신분증, 대리인의 신분증, 신청인의 도장,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
Q 이미 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)의 배우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도 이번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이 필요한가요?

참전유공자 외 전상군경·전몰군경·무공수훈자·재해 부상군경 등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,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